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97
------	------

발의일자 : 2023. 9. 5.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도병두 의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과 주변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일몰의 결정 및 권고(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다. 일몰 대상 시책 (안 제6조 )
- 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안 제7조 및 안 제8조)
- 마.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및 관리감독(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3. 9. 6. ~ 2023. 9. 1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므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

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 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및 당해 시책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이 종결되면 해산되며 위원은 그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국·과·소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관리감독 등) 구청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